

정 관

소관부서 : 영업기획팀
 제 정 : 1963. 3. 5
 개 정 : 1985. 5. 10
 1987. 3. 2
 1988. 5. 28
 1989. 5. 27
 1990. 5. 26
 1991. 5. 25
 1992. 5. 22
 1993. 5. 22
 1994. 5. 28
 1995. 5. 27
 1996. 5. 25
 1997. 5. 31
 1998. 5. 30
 1999. 5. 29
 2000. 5. 27
 2001. 6. 2
 2002. 5. 25
 2003. 5. 30
 2004. 5. 28
 2005. 5. 27
 2008. 5. 30
 2009. 5. 29
 2011. 5. 27
 2012. 5. 25
 2013. 5. 31
 2014. 5. 30
 2015. 3. 20
 2016. 3. 24
 2019. 3. 29
 2020. 3. 27
 2021. 3. 26
 2025. 3. 26
 2026. 3. 26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① 당 회사는 유화증권주식회사(이하 "당회사"라 함)라 칭한다.

② 영문으로는 YUHWA SECURITIES CO., LTD.(略號 YHSCO)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① 당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무
 - 가. 투자매매업
 - 나. 투자중개업
 - 다. 집합투자업
 - 라. 신탁업
 - 마. 투자자문업

바. 투자일임업

2. 자본시장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업무
 3.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수업무
- ② 당 회사는 전항의 사업 외에 자본시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또는 신고 후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改定 2009.5.29)

제3조 (본점의 소재지) ① 당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또는 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당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h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改定 2015.3.20)

제2장 주식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오천만주로 한다. (改定 2020.3.27)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일천원으로 한다. (改定 2020.3.27)

제7조 (주식의 종류)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改定 2012.5.25)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기명식 우선주식,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新設 2012.5.25)

제7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2 범위 내로 한다.(改定 1997.05.31)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9%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改定 1997.5.31)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新設 1997.5.31)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新設 1997.5.31.)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改定 1997.5.31)

- ⑥ 당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新設 1997.5.31)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改定 2021.03.26)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改定 2021.3.26)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당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改定 2014.05.30.)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改定 2014.5.30)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 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5. <삭제>
 6. <삭제>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改定 2014.5.30.)
-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改定 2014.5.30.)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改定 2014.5.30.)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新設 2014.5.30.)
-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新設 2014.5.30.)

제9조의 2 <삭제>(削除 2003.5.30)

제9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① 당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改定 2013.05.31)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2. 이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改定 2014.5.30.)
 -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改定 2009.05.29)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改定 2012.5.25)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改定 2008.5.30)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改定 2009.5.29)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改定 2009.5.29)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改定 2013.5.31)

- ⑧ <삭제> (削除 2021.3.26)
- 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新設 2002.5.25)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데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 수사기관에의 통보조치, 또는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新設 2011.5.27)

제10조 (시가발행) 당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 2 (동등배당) 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改定 2021.03.26)

-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改定 2019.3.29.)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改定 2021.03.26)

- 제12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당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新設 2021.3.26)
- ② 당 회사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 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新設 2021.3.26)
 - ③ 당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新設 2021.3.26)

- 제13조 (기준일)** ① <삭제> (改定 2025.3.26.)
- 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改定 2025.3.26.)
 -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改定 2025.3.26.)

제3장 사채

제13조의 2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新設 2012.5.25)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新設 2012.5.25)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改定 2014.5.30.)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新設 2014.5.30.)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改定 2014.5.30.)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改定 2014.5.30.)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일의 직전일까지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改定 2014.5.30.)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改定 2021.3.26)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改定 2014.5.30.)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新設 2014.5.30.)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改定 2014.5.30.)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改定 2014.5.30.)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조항변경 2014.5.30.)
- ⑥ <삭제> (削除 2021.3.26)

제15조의 2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新設 2002.5.25.)

제15조의 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改定 2021.03.26)

제4장 주주총회

- 제16조 (소집 및 통지)**
- ① 당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 ②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改定 2003.5.30)
 - ③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외 1개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2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改定 2009.5.29.)

- ④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改定 2011.5.27)
- ⑤ 당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 4의 제2항 및 제3항과 상법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改定 2013.5.31)

제16조의 2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新設 2002.5.25.)

-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新設 2026.03.26)

제17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명인 경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改定 2011.5.27)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改定 2019.3.29)

제17조의 2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新設 2002.5.25)

제18조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로 한다.

제18조의 2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당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新設 2002.5.25)

제18조의 3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2002.5.25)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2002.5.25)

제1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改定 2026.03.26)

제20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제22조 (이사)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며,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改定 2026.03.26)
 ② <삭제> (削除 2014.5.30.)
 ③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 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改定 2026.03.26)

제23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改定 2014.5.30.)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改定 2014.5.30.)
 ③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改定 2026.03.26)
 ④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1999.5.29.)

제23조의 2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 ①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新設 2014.5.30.)
 ②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改定 2026.03.26)

제24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改定 2014.5.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改定 2025.3.26.)
 ③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改定 2013.5.31)
 ④ <삭제> (削除 2014.5.30.)

제25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 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改定 2014.5.30.)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삭제> (削除 2021.3.26.)

제26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다. (改定 2011.5.27)

② 당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改定 2011.5.27.)

③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업무집행책임자를 둘 수 있다.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新設 2017.3.24)

제27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또한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改定 2011.5.27)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改定2012.05.25)

제27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定 2003.5.30)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改定 2014.5.30.)

제27조의 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당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改定 2026.03.26)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 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定 2014.5.30.)

제28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수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 소집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을 정하고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改定 2014.5.30.)

제28조 2 (이사회 결의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新設 2021.3.26.)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5.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동법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 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新說 2025.3.26.)
-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간의 이해상충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② 이사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新說 2025.03.26.)

제29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改定 2012.5.25)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改定 2012.5.25)

③ 이사회 의장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改定 2002.5.25)

④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新設 2026.03.26)

제30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改定 2014.5.30.)

제30조의 2 (위원회) ① 당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改定 2026.03.26)

- 1. 독립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3. 내부통제위원회(新設 2026.03.26)
-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新設 2014.5.30.)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新設 2014.5.30.)

④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다.(新設 2026.03.26)

제31조 <삭제> (削除 2014.5.30.)

제32조 <삭제> (削除 2014.5.30.)

제33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改定 2014.5.30.)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改定 2014.5.30.)

- 제34조 (상담역 및 고문)** ①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대우를 둘 수 있다. (新設 2000.05.27.)

제5장의 2 감사위원회

- 제34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당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新設 2014.5.30.)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新設 2014.5.30.)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改定 2026.03.26.)
 ④ <삭제> (削除 2017.3.24.)
 ⑤ <삭제> (削除 2017.3.24.)
 ⑥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2017.3.24)
 ⑦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2017.3.24)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新設 2014.5.30.)
 ⑨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사위원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改定 2019.3.29.)
 ⑩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 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新說 2025.3.26.)

- 제34조의3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新設 2014.5.30.)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新設 2014.5.30.)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新設 2014.5.30.)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新設 2014.5.30.)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新設 2014.5.30.)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改定 2019.03.22.)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新設 2014.5.30.)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新設 2014.5.30.)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新設 2014.5.30.)

제34조의4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新設 2014.5.30.)

제34조의5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관련 권한 등)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이 회사의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 (新說 2025.3.26.)
- ② 감사위원회는 임원(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과 대표이사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新說 2025.3.26.)

제6장 계산

제35조 (사업연도) 당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改定 2014.5.30.)

제36조 (재무제표의 작성 제출) 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定 2014.5.30.)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改定2012.05.25.)
-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新設 2014.5.30.)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定 2014.5.30.)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改定 2014.5.30.)
 -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新設 2012.05.25)
 - 2.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改定 2014.5.30.)
- ⑤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定 2014.5.30.)
-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改定 2014.5.30.)
-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3항에 의한 이사회결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改定 2014.5.30.)

제36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改定 2019.3.29)

제37조 (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37조의 2 <삭제> (削除 2012.5.25.)

제38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그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改定 2012.5.25)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당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改定 2025.3.26.)

제39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85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세칙 및 내규) 당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3조 (규정의 사항)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결의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4조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 제24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6조에 관하여는 이 정관 改定에 불구하고 상법부칙 제14조, 제15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주금액에 관한 경과규정) 이 정관 제5조, 제6조의 규정은 상법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주금액의 인상조치를 취할 때까지 그 시행을 유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10조의 2, 제12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7조의 2,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8조의 改定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의 改定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정관 변경 전에 정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조⑤항, 제13조의2, 제27조의3, 제29조, 제31조, 제36조, 제37조의2, 제38조의 改定 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적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사업연도의 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2 및 제19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7조의3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